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서울기록원 건립공사]

- 점검일시 : 2017.10.11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윤원섭,정달영

<p>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</p> <p>- 현장에서 사용중인 콘센트의 접지선이 단락되어 있으니 반출 요함.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7(가설전선)</p>	
<p>○ 기계기구 안전(건축부)</p> <p>- 고속절단기 연삭날은 제원인식이 불가능하니 제원인식이 가능한 것을 사용 요함.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6(고속절단기)</p>	
<p>○ 기계기구 안전(건축부)</p> <p>- 현장에서 사용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 접촉예방장치(덮개)가 한쪽면이 탈락되어 있으니 보수하여 사용 요함.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7(목재가공용 둥근톱)</p>	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거푸집 조립중인 슬래브상부 단부는 추후 작업시 추락재해 발생할수 있으니 작업전 안전대 걸이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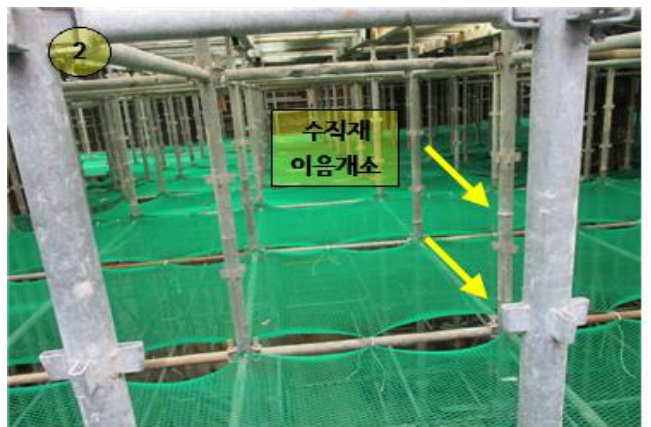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(건축부)

- 슬래브 상부에 집중적치된 자재는 분산적치하여 작업하중 이하가 되도록 조치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(건축부)

- 거푸집동바리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함.
- ① 변형, 용접 자재 등 사용금지
- ② 수평재 사이 이음 2개소는 수평재 추가 설치 요함.
- ③ 작업용 이동통로 설치 요함
- ④ 가새재(경사재) 설치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(재료), 제329조(강재의 사용기준), 제331조(조립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)

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(건축부)

- 거푸집동바리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함.

- ⑤ 수직도 확인 요함.
 - ⑥ 수평재 연결핀의 긴결 요함.
 - ⑦ 동바리 조립시 안전시설을 선설치하도록 작업계획서를 변경하고, 해체계획서 수립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(재료), 제329조(강재의 사용기준), 제331조(조립도), 제332조(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일자형 사다리는 아웃트리거를 펼쳐서 사용하고, 상부는 고정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04(사다리(일자형))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펌프카의 아웃트리거 받침은 균질한 재질의 깔판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보완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건축부)

- 마대에는 인양시 손상이 우려되는 내용물(철근 등) 적재를 금지하므로 조치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14(항공마대)

